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원 권한 정지제도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43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의원 권한 정지 제도 신설	2
2.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 백종현 · 이철규 · 강선영 · 강승규 · 조정태
김기웅 · 인요한 · 김대식 · 조정훈 · 김용태 · 김미애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7. 31.

3. 회 부 일 : 2024. 8. 1.

※ 의안번호 : 244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수행 및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의원 권한 정지 제도 신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2(의원의 권한 정지) 의원이 재판에 계속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1. 구속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피선거권 박탈¹⁾, 당선무효²⁾ 등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하도록 규율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1)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2)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3)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도적으로 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은 직위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조치로 보임.

구속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⁴⁾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고,

금고는 사형, 징역 다음으로 중한 형으로서 해당 형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도 이를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의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의원의 권한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범죄의 유형·경중, 권한 정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 16. (생략)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4)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률적으로 권한을 정지하여 의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으며, 선거범죄를 제외한 형사범죄는 재판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임기 중 상당 기간 권한이 정지될 수도 있는 점⁵⁾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⁶⁾

참고로, 권한 정지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⁷⁾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⁸⁾ 「감사원법」⁹⁾은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된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¹⁰⁾ 및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¹¹⁾에서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하도록 규정함.

5) 참고로, 2022년 기준 형사사건이 대법원(상고심)까지 가는 경우 확정되기까지 평균 550일 이상 소요됨(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2023.).

6) 개정안과 같이 의원 권한 정지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① 안 제28조의2제2호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수정하고, ② 침익적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7)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8)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의결(2023.02.08.) 당시 장관의 직무상 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수행비서 및 관용차 지원, 집무실 사용이 중단되었고, 보수는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를 제외하고 받았음. 다만, 장관의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므로 경호와 의전 등은 기존과 같이 제공되었음.

9) 「감사원법」 ②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함.

1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2.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3(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제28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현행법 제48조의2¹²⁾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상임위원 선임·개선 및 그 요청 시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의 기소, 재판 및 형 선고 여부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형사피의자인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등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

12) 「국회법」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별로 신고하여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¹³⁾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안건, 의원이 수사받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혐의·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5

13) 「국회법」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 7. (생 략)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의 선임·선임요청 또는 개선·개선요청과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